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2년 4월 20일

계룡시 조례 제898호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를 “건설도시, 디지털뉴딜”로 한다.

제9조 중 “정책기획업무”를 “기획업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수당 등)”을 “(경비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정책자문위원의 자문, 자료 수집 등을 위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생략)</p> <p>②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 보건복지, 안전경제, 문화체육, 농업환경, <u>건설도시</u> 분야로 하되, 분과위원회 별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④ (생략)</p> <p>제9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u>정책기획업무</u> 팀장이 간사가 되고, 분과위원회는 소관업무 팀장이 간사가 된다.</p> <p>제11조(<u>수당 등</u>) <신설></p> <p>(생략)</p>	<p>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건설도시, 디지털뉴딜</u>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간사) ----- ----- <u>기획업무</u> ----- ----- ----- -.</p> <p>제11조(<u>경비지원</u>) ① <u>시장은 정책자문위원의 자문, 자료 수집 등을 위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u></p> <p>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2년 4월 20일

계룡시 조례 제899호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차기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 업무)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의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현황의 파악
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9조(사무직원 파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자문위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2년 4월 20일

계룡시 조례 제900호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시장이나 시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6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2년 4월 20일

계룡시 조례 제901호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권익증진, 고용확대, 창업 육성 및 문화 활성화 등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청년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협업 활동 등을 위한 자율이용 공간 제공
2.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등 운영
3. 청년의 취업·창업 등을 위한 지원
4. 청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교류활동 지원
5.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의 시장이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청년시설의 이용자는 청년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 ④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년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청년시설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강사료, 재료비 등 수강료 를 실비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1조 및 제11조의 2”로 하고, 제2항 “위탁하거나 대행”을 “위탁”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1조의 추진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을 “제11조의 추진사업 및 제11조의 2의 시설을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 략) <u><신 설></u>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현행과 같음) 5. <u>“청년 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권익증진, 고용확대, 창업 육성 및 문화 활성화 등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u>
제11조(추진사업)(생 략) <u><신 설></u>	제11조(추진사업)(현행과 같음) <u>제11조의2 (청년시설 설치·운영)</u> <u>① 시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년시설은</u> <u>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u><신 설></u>	1. <u>청년의 협업 활동 등을 위한 자용 이용 공간 제공</u> 2. <u>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등 운영</u> 3. <u>청년의 취업·창업 등을 위한 지</u>

원

4. 청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교류활동 지원

5.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의 시장이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년시설의 이용자는 청년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년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년시설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강사료, 재료비 등 수강료를 실비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수행) ① 시장은 제11조의 추진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

제12조(사업수행) ① -----제11조 및 제11조의 2-----
-----.

② -----

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 위탁 -----
-----.

제13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생략)

제13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현행
과 같음)

② 시장은 제11조의 추진사업을 위
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
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1조의 추진사업 및 제11
조의 2의 시설을 운영하는-----

-----.

제17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된 날
로부터 시행한다.

<삭 제>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2년 4월 20일

계룡시 조례 제902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실장, 과장, 단장의 직급 등)”을 “(국장, 실장, 과장, 단장 등의 직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장 및 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인구정책통계”를 “인구통계”로 한다.

제7조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14조”를 “제127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20조”를 “제134조”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02명”을 “4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89명”을 “39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3명”을 “15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3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집 행 기 관				의 회 사무기구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총 계	410	395				15
정무직계	1	1				-
시 장	1	1	-	-	-	-
일반직계	395	380				15
4급	4	3	1	-	-	-
4~5급	1	1	-	-	-	-
5급	24	15	2	1	4	2
6급 이하 계	365	352				13
전문경력관 계	1	1				-
별정직계	1	1				-
6급 상당 이하 계	1	1				-
연구직계	2	2				-
연구관	-	-				-
연구사	2	2				-
지도직계	11	11				-
지도관	1	1				-
지도사	10	10				-

신 · 구조문(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계룡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계룡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 ----- ----- ----- ----- ----- ----- ----- ----- ----- ----- ----- ----- -----.</p>
<p>제2조(국장, 실장, 과장, 단장의 직급 등) ① (생략)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국장, 실장, 과장, 단장 등의 직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장 및 과장----- ----- ----- ----- ----- ----- ----- -----.</p>
<p>제6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단위 행정기구의 설치) ① (생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기획, 뉴딜정책, 예산, 감사법무, <u>인구정책통계</u>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③ (생략)</p>	<p>제6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단위 행정기구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인구통계</u>----- ----- ----- -----.</p> <p>③ (현행과 같음)</p>

제7조(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사면과 신도안면에 보건지소를 두며, 명칭·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0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19조(부면장) ① 법 제120조에 따라 면에는 부면장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02명으

제7조(설치) -----
----- 제126
조-----

제10조(설치) ① 법 제126조-----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부면장) ① 법 제134조-----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정원의 총수) -----
----- 410명-----

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8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3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집 행 기 관				의 회 사무기구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총 계		402	389				13
정무직계		1	1				-
시 장	1	1	-	-	-	-	
일반직계		387	374				13
4급	4	3	1	-	-	-	
4~5급	1	1	-	-	-	-	
5급	24	15	2	1	4	2	
6급 이하 계		357	346				11
전문경력관 계	1		1				-
별정직계	1		1				-
6급 상당이하계	1		1				-
연구직계		2	2				-
연구관	-		-				-
연구사	2		2				-
지도직계		11	11				-
지도관	1		1				-
지도사	10		10				-

-----.

1. ----- 395명
2. ----- 15명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3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집 행 기 관				의 회 사무기구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총 계		410	395				15
정무직계		1	1				-
시 장	1	1	-	-	-	-	
일반직계		395	380				15
4급	4	3	1	-	-	-	
4~5급	1	1	-	-	-	-	
5급	24	15	2	1	4	2	
6급 이하 계		365	352				13
전문경력관 계	1		1				-
별정직계	1		1				-
6급 상당이하계	1		1				-
연구직계		2	2				-
연구관	-		-				-
연구사	2		2				-
지도직계		11	11				-
지도관	1		1				-
지도사	10		10				-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2년 4월 20일

계룡시 조례 제903호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모범·친절·우수·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을 “모범·친절·우수·효행공무원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2. (생 략)</p> <p>3. <u>모범·친절·우수·효행공무원</u>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 내·외 시찰 등 지원</p> <p>4. ~ 11. (생 략)</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모범·친절·우수·효행공무원</u> 을 ----- -----</p> <p>4. ~ 11. (현행과 같음)</p>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2년 4월 20일

계룡시 조례 제904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휴가 등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③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각 재직기간별 부여된 휴가는 해당기간 중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1. 10년이상 20년미만 : 10일(2회 이하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20년이상 30년미만 : 20일(4회 이하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3. 30년이상 : 20일(4회 이하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세부기준을 정하여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지원하거나 종사한 경우

제1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12조 제5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제외한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선서자 직

성명 인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계룡시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장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계룡시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2년 4월 20일

계룡시 조례 제905호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면·동장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신청서를 접수한 면·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시간제/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시간제/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양육공백 유형	취업 한부모 <input type="checkbox"/>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계 룽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 표]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금 지원율(시비)	비 고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	50%	
	나		50%	
	다		50%	
	라		50%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따름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2년 4월 20일

계룡시 조례 제906호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해
야”를 “사전 승인을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처분과”를 “처분
및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이용자의 범위 등) ① (생 략)</p> <p>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p> <p>1. <u>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u></p> <p>2. 3. (생 략)</p> <p>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p> <p>1. 2. (생 략)</p> <p>3.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u>사전승인</u>을 받아야 하며 <u>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u>해야 한다.</p> <p>4. (생 략)</p> <p>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u>처분</u>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p>	<p>제5조(이용자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에 따라 <u>강제처분의 대상</u>이 되는 사람</p> <p>2. 3. (현행과 같음)</p> <p>제8조(수탁자의 의무)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사전 승인</u>을 받아야 ----- -----.</p> <p>4. (현행과 같음)</p> <p>5. ----- <u>처분 및 그 밖의</u> ----- -----.</p>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2년 4월 20일

계룡시 조례 제907호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노인 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p> <p>1. <u>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u></p> <p>2. ~ 4. (생략)</p>	<p>제9조(이용자의 제한) ----- ----- ----- -----.</p> <p>1.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p> <p>2. ~ 4. (현행과 같음)</p>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2년 4월 20일

계룡시 조례 제908호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계룡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가.
 - 가. 사산아
 -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계룡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개장하여”를 “개장하여”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입원 등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u>계룡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u></p> <p><신 설></p> <p>2. <u>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계룡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u></p>	<p>제3조(지원대상) ----- ----- -----.</p> <p>1. <u>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u> -----</p> <p>2. <u>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u> 우 가. <u>사산아</u> 나. <u>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u> 다. <u>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u></p> <p>3. ----- <u>개</u> <u>장하여</u> ----- -----</p>
<p>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 ③ (생략)</p> <p><신 설></p> <p>④ (생략)</p>	<p>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u></p> <p>1. <u>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u></p> <p>2. <u>천재지변, 질병, 입원 등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u></p> <p>3. <u>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u></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2년 4월 20일

계룡시 조례 제909호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관내의 기존묘지에서 매장된 유골”을 “계룡시의 기존묘지에서 매장된 유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관내”를 각각 “계룡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배우자 중 1명이 계룡시 장사시설 등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를 동시에 합장하려는 경우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호 중 “시에”를 “계룡시에”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공설장사시설 등의 사용 면적(제14조 관련)

명 칭	구 분	사용면적		비고
정명각	봉 안	1기	30cm × 30cm	
		부부봉안단	58cm × 30cm	

[별표 3]

○ 공설장사시설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내역(제18조 관련)

구 분		사용료(원)	관리비(원)	기타 경비 (봉안함 등)	비고
유 연 (30년)	개인	200,000	100,000	사용자 구입	
	부부	600,000	300,000	〃	
유연 연장 (15년)	개인	100,000	50,000	〃	
	부부	300,000	150,000	〃	
무 연		없 음	없 음	〃	

※ 개인봉안단 안치자가 부부봉안단으로 합장을 원할 경우 부부봉안단 안치 시점으로 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 신규(90만원) 납부 적용

[별표 4]

○ 공설장사시설 등의 사용료 환급 기준(제21조 제3항 관련)

단계별	사용기간	환급률 (%)	단계별	사용기간	환급률 (%)
1	6개월 이내	75	10	12년초과 13년미만	30
2	6개월초과 1년미만	70	11	13년초과 14년미만	25
3	1년초과 3년미만	65	12	14년초과 15년미만	20
4	3년초과 5년미만	60	13	15년초과 16년미만	15
5	5년초과 7년미만	55	14	16년초과 17년미만	12
6	7년초과 9년미만	50	15	17년초과 18년미만	10
7	9년초과 10년미만	45	16	18년초과 19년미만	7
8	10년초과 11년미만	40	17	19년초과 20년미만	5
9	11년초과 12년미만	35	18	20년초과	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 (사용자격) ①제7조에 의하여 공설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생 략)</p> <p>2. <u>관내의 기존묘지에서 매장된 유골을 공설묘지내 시체 또는 유골과 합장하고자 하는 자</u></p> <p>3.·4. (생 략)</p> <p>②공설봉안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p>1. <u>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자, 주민등록이 된 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u></p> <p>2. <u>관내의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무연유골포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u></p> <p><신 설></p> <p>3. (생 략)</p> <p>제18조 (사용료 등) ① (생 략)</p>	<p>제12조 (사용자격)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계룡시의 기존묘지에서 매장된 유골</u>----- ----- -</p> <p>3.·4.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계룡시</u>----- ----- -----</p> <p>2. <u>계룡시</u>----- ----- -----</p> <p>3. <u>배우자 중 1명이 계룡시 장사시설 등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를 동시에 합장하려는 경우</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18조 (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②제17조제1항에 의거 연장사용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사용료 등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설 장사시설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봉안묘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사망일 현재 신에 주민등록을 둔 자는 전액

2. ~ 4. (생략)

<삭 제>

제19조 (사용료 등 감면) -----

1. -----
 ----- 계룡시
에 -----
 -

2. ~ 4. (현행과 같음)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2년 4월 20일

계룡시 조례 제910호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을 “「자동차등록령」 제5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로,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로, “해당 자동차에 대한”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세”를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계룡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계룡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u>법 제6조제1항</u>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u></p> <p>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u>자동차세</u>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p> <p>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p>	<p>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 「<u>자동차등록령</u>」 제5조 및 「<u>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u>」 제99조-----</p> <p>-----</p> <p>-----</p> <p>-----</p> <p>-----</p> <p>-----</p> <p>-----</p> <p>-----</p> <p>----- <u>법</u></p> <p><u>제6조</u>-----</p> <p>----- <u>해당</u> -----</p> <p>-----</p> <p>② -----</p> <p>----- <u>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u> -----</p> <p>-----</p> <p>-----</p> <p>-----</p> <p>-----</p> <p>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p>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2년 4월 20일

계룡시 조례 제911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룡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1.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과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

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 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

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문화재에 대한 감면인 경우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2년 4월 20일

계룡시 조례 제912호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중 100주 이상 신규로 식재하는 가로수 조성의 적정성(관목류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업무 관련 부서의 장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 ①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4. 도로점용허가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조성,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림 등 조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6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① 식재할 가로수 중 교목의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구분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다.

1. 광로·대로 또는 보도 폭 5미터 이상의 도로: 가슴높이지름 12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지름 15센티미터 이상
2. 중로·소로 또는 보도 폭 5미터 미만의 도로: 가슴높이지름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지름 12센티미터 이상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부담금)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훼손자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계룡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계룡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계룡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계룡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따른 비용부담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부담금으로 본다.

[별표 1]

원인자.훼손자 부담금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구분		부과금액 산출
원인자 부담금	1. 옮겨심기.제거하는 경우	.도급공사설계비
	2. 가지치기하는 경우	.도급공사설계비
훼손자 부담금	1. 별목, 수간절단, 수피훼손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도급공사설계비
	2. 50% 이상 가지훼손 등 고유 수형을 상실한 경우	.도급공사설계비
	3. 가지훼손 20% ~ 50%의 경우	.해당 수목가격의 20% ~ 50% + 재료비 + 작업비
	4. 가지훼손 10% ~ 20%의 경우	.해당 수목가격의 10% ~ 20% + 재료비 + 작업비
	5. 가로수 관리시설에 대한 피해	.관리시설 재료비 + 설치비 + 정리비

1. 도급공사설계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한다.
2. 수목비는 조달청 가격정보지의 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가 적용 산정한다.
3.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도급공사설계비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승인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하자책임 담보기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원인자에게 하자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가지치기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하자책임담보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가로수</p> <p style="font-size: small;">[조성 [옮겨심기 [울거 [제거 [가지치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lex-grow: 1;"> <p>승인 신청서</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p>처리기한</p> <p>10일</p> </div> </div>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종	규격	수고: 가슴높이지름: 근원지름:	수량
	그 밖의 사항			
사유				
작업방법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일까지(일간)
<p>「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계룡시장 귀하</p>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별지 제2호서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가로수</p> <p>[] 조성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승인서</p> </div> </div>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종		규격	수고: 가슴높이지름: 근원지름:	수량	본
사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 년	월 월	일부터 일까지(일간)
승인조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			
	납부기간					
<p>「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계룡시장 인</p>						
<p>※ 첨부서류</p> <p>1. 승인조건 1부</p> <p>2. 납입고지서 1부(직접 사업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p>						

210mm×297mm(백상지)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2년 4월 20일

계룡시 조례 제913호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을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을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를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을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란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제2조”를 “란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75세”를 “만 75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반드시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 또는”을 “반드시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 또는”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중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으로
“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제4조 관련)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4.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 제2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	100분의 100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 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4.아동·청소년	8.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100분의 100 (1일 무료 횟수 3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 ----- -----.</p>
<p>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p>	<p>1. ----- ----- -----.</p>
<p>가. “<u>시내버스</u>”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u>」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p>	<p>가. “<u>시내버스</u>”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u>」 제3조제1호가목----- ----- -----.</p>
<p>나. “<u>농어촌버스</u>”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u>」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p>	<p>나. -----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u>」 제3조제1호나목----- ----- -----.</p>
<p>다. “<u>수요응답형 버스</u>”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p>	<p>다. -----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3조제1항제3호----- ----- -----.</p>
<p>라. “<u>마을버스</u>”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u>」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p>	<p>라. -----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u>」 제3조제1호다목-----</p>

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마. “공영버스”란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

마. -----란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
-----.

2. -----

-----.

가. 만 75세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

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
조에 따른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
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신 설>

3. 4. (생 략)

<신 설>

제3조(책무)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4조(지원 대상) ① (생 략)

1항제3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
조-----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인 아동·청소년

3. 4. (현행과 같음)

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
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
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
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
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이
용하여야 한다.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
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
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 또는 시장이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①·② (생략) <신설>

제10조(적용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지방재정법」,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 반드시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 또는 ----- .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적용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별지)

현 행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4.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 제2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	100분의 100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 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30	
개 정 안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4.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 제2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	100분의 100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 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4. 아동·청소년	8.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100분의 100 (1일 무료 횟수 3회)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2년 4월 20일

계룡시 조례 제914호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기술교육 및 수리·정비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이하 “순회교육반”이라 한다)은 계룡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기능) ① 순회교육반은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수리·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② 농업기계 순회교육(이하 “순회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면·동의 리·통 영농마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순회교육반 편성)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교관 2명(농기계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안전사고예방 등에 유의하여 운영·관리 한다.

제5조(순회교육업무의 전담 등) ① 순회교육반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및 수리·정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② 순회교육 업무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할 때는 농업기계 교육 및 수리·정비가 가능한 인원(농기계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순회교육 전용차량) ① 순회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차량을 운행한다.

② 제1항의 차량에는 순회교육용 장비와 공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차량에는 별표 1에 따른 표지를 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순회교육 기종) 순회교육반의 기술교육 및 수리·정비 대상 농업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양수기 등 중·소형기종으로 한다.

제8조(순회교육 부품대금) ① 순회교육에 소요되는 수리부품 대금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

② 다만, 1회 수리비 총액이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

제9조(순회교육 계획의 수립) ① 순회교육은 연간 50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일정별 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연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3월부터 10월 중에 중점 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농업인의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순회교육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내구연한 및 수요 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순회교육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정리한다.

1.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운영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
3. 농업기계 순회교육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농업기계 순회교육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농업기계 순회교육 일정(별지 제5호 서식)
6. 농업기계 순회교육 장비 및 공구 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1조(사전홍보) ① 시장은 순회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마을방송, 소식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② 시장은 순회교육일 1주일 전에 순회교육 대상지 면·동장과 이·통장에게 통보하여, 마을방송을 이용한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제12조(현장교육) 순회교육시 현장참여 농업인의 자체 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제13조(수리곤란 기계) 현장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4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유관기관 및 이·통장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순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5조(예산) 순회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고시 제2022-48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0일

계 룡 시 장

○ 건물번호(도로명주소) 부여

관련지번	도로명주소	고 시 일 (효력발생일)	도 로 명 고 시 일	도로명 부여사유
계룡시 금암동 54-5	계룡시 금암로 174 (금암동)	2022.04.20.	2009.05.27.	법정동 명칭(금암동)을 이용하여 부여
계룡시 금암동 54-4	계룡시 금암로 172 (금암동)	2022.04.20.	2009.05.27.	법정동 명칭(금암동)을 이용하여 부여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304-2	계룡시 엄사면 도곡4길 30-6	2022.04.20.	2009.05.27.	도곡로에서 네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335-8	계룡시 엄사면 번영10길 17-7	2022.04.20.	2009.05.27.	번영로에서 열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 건물번호(도로명주소) 폐지

관련지번	건물번호	고 시 일 (효력발생일)	폐지사유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6-3	계룡시 두마면 왕대로 166	2022.04.20.	건 물 말 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2-840-2372)에 문의 또는 계룡시청 홈페이지(www.gyery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고시일자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되며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건축주 등은 거주·활동의 종료 등으로,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건물번호 폐지신청(건축물대장 말소된 경우는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